

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[2019. 10. 11 조례 제889호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역혁신협회의의 심의사항)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증평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협의·조정
2. 「증평군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
3. 중·장기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정책 협의
4.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와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

제3조(협의회의의 구성) ① 협의회의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람
2. 「증평군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
 - 가. 지역 활성화사업 사업단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자
 - 나. 지역 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대표 및 관련 전문가
 - 다. 전문가 등 지역 활성화사업 관련 심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4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3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5조(의장의 직무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,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·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(口頭)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.

제7조(분과협의회)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협의회는 장은 분과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분과협의회 의결로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.

③ 분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제8조(간사) ①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협의회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개요,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9조(의견의 청취 등) 의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,

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나 분과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